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7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이강일·강득구·김남근

김남희 • 민병덕 • 민형배

박주민 · 이성윤 · 임미애

정성호·조계원·허 영

황명선 · 황운하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대형 온라인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행태를 보이고 있음.

온라인플랫폼의 성패를 가르는 이용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의 불공정 행위에 나서고 있고, 이는소비자, 플랫폼 종사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로 귀결되고있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에 티 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들은 1조원이 훨씬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독과점 배달업체들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으로 소상공인들과 배달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EU)나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도 기존 법 개정 대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 고, 최근 미국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 플랫폼인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 고 판결한 바도 있음.

기존의 법률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워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플 랫폼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법이 정한 요건

- 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 끼워팔기 행위, 멀티호밍 제한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 노출순위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표시 사항의 기초자료 및 표 시 기준 등을 공시하여야 함(안 제19조).
- 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20조).
-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불공 정거래행위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 아.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중개거래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등 의무를 준수하도 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9조).
- 차.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연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

도록 함(안 제30조).

- 카.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 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 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 35조).
- 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분 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6조).
- 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안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 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54조).

법률 제 호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플랫폼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플랫폼시장"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서 비스가 거래되거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용역(일 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콘텐츠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 2.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온라인플랫폼서비스"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들 간의 재화·용역·콘텐츠(이하 "재화등"이라 한다) 등의 제공·이용·거

- 대·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 간의 재화 등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
- 나. 온라인 검색서비스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로부터 키워드, 음성, 문장 등의 입력어로 검색 요청이 있으면 모든 웹사이트에서 입력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
- 다.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 자료 등의 게시, 채팅(chatting) 등을 통하여 정보나 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간의 관계를 구축하여 주는 서비스
- 라. 동영상공유서비스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동영 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마.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을 제어하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software application)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서비스
- 4.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5.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란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온라인플랫

폼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 6.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중에서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7.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중에서 온라인플 랫폼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8. "교차네트워크효과"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한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수 및 이용행태가 동일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들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 9. "멀티호밍(multihoming)"이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가 어느 한 유형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둘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10.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받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말 한다.
- 11.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온라인 중개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 1) 재화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와의 연결

수단 제공

- 나. 재화등에 대한 청약의 접수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 12.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 게 제공한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 게 제공한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플랫폼 중 개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 13.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온라인플 랫폼 이용사업자를 말한다.
- 14.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온라인플랫폼 시장과 관련하여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적용 범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등

- 제5조(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휴업을 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인 경우

- 2.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인 경우
- 3.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수가 월평균 1천만명 이상인 경 우
- 4.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수가 월평균 5만개 이상인경우
- ②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공정시장가치, 월평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수 및 월평균 온라인플 랫폼 이용사업자 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가까운 미래에 예측되는 전망을 포함한다)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
 - 2.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관문으로 작용할 것
 - 3.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제2호의 온라인플랫폼서비스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접근이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지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것
 - ②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 발행주식의 시가총액 등 사업규모
 - 2. 재화등의 제공ㆍ이용ㆍ거래ㆍ교환 등 상호작용을 위해 온라인플

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수

- 3.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 4. 해당 거래분야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 5.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요·공급 등 반대작용 간 상호 효용에 미치는 효과
- 6.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편익, 시장의 진입장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네트워크효과 및 데이터 집적도. 이 경우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 권한과 분석능력을 고려한다.
- 7. 온라인플랫폼 이용자가 재화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 호작용을 하는 수단 또는 매개로 다른 온라인플랫폼을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는 효과
- 8. 그 밖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갖는 특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시장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수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직 지속적인 시장지

배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지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1.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사실
- 2. 이 법에 따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3. 향후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때에 이 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신청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하거나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여부를 변경할 수있다.
-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내려진 경우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2년마다 그 지정의 유지 여부 및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면 해당 신고일에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정 및 지정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의 목록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이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목록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위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면 종전의 시장지배적 플

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되며, 종 전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 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 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 제10조(자사우대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서 경쟁사의 재화등보다 자신의 재화등을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거래하는 재화등을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등을 보다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등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
 - 2.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 집되는 비공개 정보를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등과 경쟁하는 자사 재화등의 거래에 사용하는 행위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1조(끼워팔기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온라인플 랫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 2.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2조(멀티호밍 제한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가 경 쟁 온라인플랫폼에 접근 또는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만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서비스와 경쟁적인 다른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3조(부당한 차별의 금지)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 랫폼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부당한 차별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최혜대우 요구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신의 온라인플랫폼 상에서 거 래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에 서 적용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보복조치의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의 불리한 변경,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정지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조사에 대한 협 조
 - 2. 제3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 3.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 4.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 5.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제16조(경쟁제한성의 추정)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실제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경우
 - 2. 다른 법률의 준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확보,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핵심 기능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제17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동의절차" 라 한다)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③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절차로 최종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최종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보다 부담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공시의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 야 한다.
 - 1.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2.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에 연관된 서비스로서 특정한 유상 서비스의 이용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 3. 검색순위, 노출순위, 그 밖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표시 사항의 기초 자료 및 표시 기준
 - 4.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수집·정리·분석·이용하는 정보 및 그 수집·정리·분석·이용의 목적 및 조건

- 5. 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대상 정보 및 제공의 조건·방법
- 6.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충상담, 협의 등의 요청·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7. 그 밖에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 조건 중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0조(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1. 기업결합의 대상기업
 -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기업결합 대상기업의 각 연간 매출 규모
 - 3.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기업결합 대상기업의 각 온라인플 랫폼서비스별 연간 매출규모
 - 4.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기업결합 대상기업의 각 온라인플

랫폼서비스별 연간 및 월간 활성이용자 수

- 5. 기업결합의 사유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장조사

- 제21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이하 이 조에서 "최종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4조에 따른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을 입증하기 위한 상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마친 때에는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최종결정의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 결과 최종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한 시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 1. 최종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 2. 최종결정이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잘 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내려진 경우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실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 필요 성에 관한 검토를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조사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새로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 2.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 3.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조사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 결과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그에 필요한 이 법 또는 하위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개입한 행위의 결과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 2.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균형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시장조사의 개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시장조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조사 개시결정을 내려야한다.
 - ② 시장조사 개시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조사기간
 - 2. 조사목적

- 3. 조사의 쟁점에 관한 설명 및 조사내용
- 4. 조사대상
- 5.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영업현황 등 시장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 내용, 요구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 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 제24조(신의성실의 원칙)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중 개이용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에 따른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 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 "중개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1.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및 계약 변경·갱신·해지의 사유·절차 등 에 관한 사항
- 2.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제공 기간 및 수수료의 부과기 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
- 3.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의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 4.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 5. 재화등의 판매대금 정산 방식, 절차, 시기에 관한 사항
- 6. 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7. 거래되는 재화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8.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중개거래계약서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거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중개거래계약의 방법·절차 및 서명·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26조(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 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이유를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통지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미리알려야 한다.
 - ③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 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플랫폼 중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통지기 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 제27조(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온라인플랫폼 중개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28조(보복조치의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정지·제한 또는 중개거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 2.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 3.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 4.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제2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2.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 4.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검색배열 순위의 조작·변경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6.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 2.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
- 3.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의 사업 능력 수준 및 그 격차

- 4.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의존도
- 5.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 및 특성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0조(재화등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구매확정 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 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 ②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온라인플랫폼 중 개이용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이용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이용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용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1. 동일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사업자"라 한다)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이용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유지한 전체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온라 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가 가입할 것
 - 나. 이용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③ 제1항에 따라 이용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1. 이용사업자단체의 명칭 · 목적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용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이용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2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등록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등) ①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단체는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중 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중개거래 계약의 변경, 중개수수료·광고비·부가서비스 등 거래조건(이하 이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중개사업자는 협의 횟수 및 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중개사업자는 다수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로 구성된 이용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등록사업자단체는 중개사업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 용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중개거 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협약 체결의 권장)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 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관 런 법령의 준수, 상호 지원 및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 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중 개이용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 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의 효율적인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체결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 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 내용, 요구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 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위반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28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2항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법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해당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112조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6장 분쟁의 조정

- 제36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온라인플랫폼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경우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하고,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온라인플랫폼시장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그 밖에 온라인플랫폼시장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 거나 위촉하되, 해당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 ⑦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⑨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 무를 겸할 수 있다.
- 제37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은 위촉일 기준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 인 경우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즉시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 제3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 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한다)로 구분한다.
 -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심의·의결은 전체회의의 심의·의결로 본다.
 -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 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의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사항의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 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 제3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 였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분쟁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0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 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 한다.

- 제41조(조정 신청) ① 분쟁당사자는 제40조에 따른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5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 및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로서 6 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을 한 때에는 그 시효가 당초의 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 로 본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42조(조정)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2. 제40조에 따른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4.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 쌍방이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 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3.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4.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 5. 분쟁당사자가 조정의 신청 전후에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
- 6. 분쟁당사자가 조정의 신청 전후에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 7.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협의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47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44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조치

- 제4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53 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2.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 3.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제46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5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끝난 날은 최후의 위반행위가 끝난 때로 한다.
 - ③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 제47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재발 방지
 -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48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4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온라인플랫폼 폼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47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 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

락하였을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9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또는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제54조에 따른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재판을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0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 인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 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 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최종이용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 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 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 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 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 하다고 인정될 것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미리 제54조에 따른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철회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⑤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⑥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제51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50조에 따른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52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 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또는 제32조제2항·제4항을 위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 한다.
- 제53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한다.
 -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

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 제54조(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 ① 제21조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문,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의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있다.

- 제5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자
- 2. 제1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4. 제2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5. 제2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6. 제4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5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벌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제1항 또는 제60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과태료) ①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한 자
 - 2. 제23조제5항 또는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위반행위 또는 영업을 계속한 자
 - 4.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5.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률」 제8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한 자
- 6.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③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하 거나 중지한 자
- 2.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온라인플랫폼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공정거래위원 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3조(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온라인플랫폼 중 개거래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부칙 제5조 단서에 따라 체결 또는 갱신한 중개거래계약부터 적용한다.
- 제4조(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중개거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중개거 래계약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중개거래계약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